

## 연방법무부, 외국인들을 담합혐의로 기소



**독** 일 국적자가 플로리다주에서 기소됐다. 그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서 해저 호스의 입찰 담합, 가격 고정 및 시장 분할을 위한 담합에 참가했다고 한다.

해저 호스는 유연성이 좋은 고무호스로서 탱크로부터 다른 시설로 기름을 옮기는 데에 사용된다. 이번 카르텔 동안에 수백만 달러 가치의 해저 호스와 부대설비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상에서 원유를 추출하는 사업자와 원유 운송업자 및 미연방 국방부가 이번 카르텔로 인한 피해자들인 것이다.

“해저호스 부문에서의 담합에 대한 지속적인 기소를 통해 독점금지국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담합참가자들을 적발해낼 것이다”고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Bangert씨는 적어도 2000년 12월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담합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연방법무부는 이들이 담합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Bangert씨와 그와 함께 공모한 자들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했다.

- ①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서 전화, 팩스 및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해저호스의 판매와 관련한 회합에 참여
- ② 담합참가자들 사이에 해저 호스 시장을 분할하는 것에 동의
- ③ 담합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감독하기 위해 해저호스의 가격 목록을 정하는 회합에 참여하고 이에 동의
- ④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담합참가자들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
- ⑤ 입찰에서 담합자들간 합의한 바에 따라 가격 제시
- ⑥ 고객들로 받은 정보를 담합자들간 제공
- ⑦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고객들에게 담합 가격으로 해저호스를 판매

- ⑧ 담합을 위해 소속 직원들을 참여시키도록 함
- ⑨ 개인 전화 번호, 개인 전자메일 계정 및 암호 등의 다양한 수단들을 이용하여 담합 은폐 시도

8명의 외국인 대표이사들이 2007년 5월 2일에 휴스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구속되었으며, 휴스턴에서 해저호스에 대한 카르텔 회합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07년 12월 12일에는 Bryan Allison, David Brammar, Dunlop Oil & Marine Ltd.의 책임자, 영국의 해저호스 제조업자는 담합에 참가한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Allison은 2년의 징역형, Dunlop Oil & Marine Ltd.사의 Peter Whittle는 30개월의 징역형을 받는 데에 동의했다. Allison, Brammar과 Whittle는 구금되어 영국으로 송환되었으며 거기서 영국 당국에 의해 형사기소 되었다. 2007년 11월에는 Christian Caleca와 Jacques Cognard 등이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14개월의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

Francesco Scaglia와 Val M. Northcutt는 2007년 9월에 플로리다주의 연방지방법원에서 담합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또 다른 두 명의 외국인들인 이탈리아의 Vanni Scodeggio와 일본의 Misao Hioki도 2007년 5월에 체포되어 기소됐다. 이번 조사는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 형사집행부, 연방국방부의 조사국, 연방 해군 형사조사청 및 FBI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 조사당국들은 현안에 대해 서로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Bangert는 서면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04년 6월 22일 이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3년의 징역형과 3십5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발생시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백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벌금은 두 배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2007. 12. 26. 연방법무부)

●●● 미국 ●●●

## 연방법무부, 카르텔 신고자 책임감면제도와 관련된 법원판결 존중하기로



**연**방법무부는 U.S. v. Stolt-Nielsen S.A. 사건에서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방법무부는 U.S. v. Stolt-Nielsen S.A. 사건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독점금지국은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실망했지만,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이 Stolt-Nielsen의 두 개의 계열사와 두 명의 이사가 조건부 카르텔 신고자 책임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독점금지국이 이 프로그램을 1993년에 개정한 이래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범위반 사건과 약 4억 달러 규모의 형사사건에서 적용되었다. 독점금지국이 그동안 수행한 많은 국제적 조사에서 감면 대상자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많다. 최근의 항공요금, 항공화물요금, 컴퓨터 메모리 칩, 비타민 및 기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품과 서비스들에 대한 기소사건도 모두 이에 해당된다.

이에 독점금지국은 앞으로도 카르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카르텔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9월 6일에 필라델피아 연방 대배심은 런던에 소재한 Stolt-Nielsen S.A.사의 두 개의 계열사와 두 명의 이사가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화물

선적 탱크 운송 계약에서 입찰담합, 가격 확정 및 고객 할당 등의 공모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2007년 11월 29일에 필라델피아 연방 지방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07. 12. 26. 연방법무부)



## EU위원회, 제약업에 대한 조사 착수



**E**U위원회는 제약업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 상 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 혁신적인 제네 리크 제약업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 인다. 이번 조사는 유럽 시장에서 제약업 부문에서 의 경쟁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매우 소수의 제약업자들만이 시장에 신규 진입을 했으며, 제네릭 회사의 신규 진입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는 데 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특허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합 의와 같은 제약사들간의 협정이 EU경쟁법에서 금 지하고 있는 행위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이밖에도 사업자들이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만드는지 여부, 특허권의 남용 여부 및 EU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펼칠 것이다.

이 분야에서의 경쟁 활성화는 공익을 위해서 필수 적이다. 2008년 가을에는 중간보고서가 그리고 2009년 봄에는 최종보고서가 발간될 것인데, 이를 위해 EU위원회와 각 회원국들의 경쟁당국들이 중 대한 경쟁상의 문제들에 대한 향후 취해야 할 방안 들과 개별적인 사안들에 특수한 경쟁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Neelie Kroes EU위원회 경쟁위원은 “정부와 소비 자 개개인들은 가격 대비 더욱 효과있는 의약품들 이 생산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만일 혁신적인 제품들이 생산되지 않고 보다 저렴한 제네릭 제품 들의 출시가 지연된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밝혀내

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특정 회사에 대해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 사하는 카르텔 사건과는 달리, 이번 조사는 위원회 가 특정 회사를 겨냥하고 수행하는 조사가 아니다. 이번 조사는 단지 이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를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위원회가 다음 단계의 조사 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위원회가 고려하고 있는 이러한 정보로 는 지적재산권법의 행사, 소송 및 분쟁해결절차 등 이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기업들이 비밀로 하고 자 하는 것들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 들은 쉽게 은닉되거나 폐기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제약업 분야에서의 혁신은 특허와 기타 지적재산권 에 의해 주도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들 기존 권리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이 분야에서의 특수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이는 회원국들에게 여러가지 보건 정책 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 고 이번 조사는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의약품으로 제한된다.

이와 같은 조사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EU위원회 는 기업체 및 협회 등으로부터 정보를 모으기 위해 설문 등 광범위한 조사 수단을 이용할 것이다. 조 사 기간 동안 위원회는 누구와도 대화할 자세를 유 지하고 있을 것이다.

Europe

(2008. 1. 16. EU위원회)

●●● EU ●●●

# EU위원회, MS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식 조사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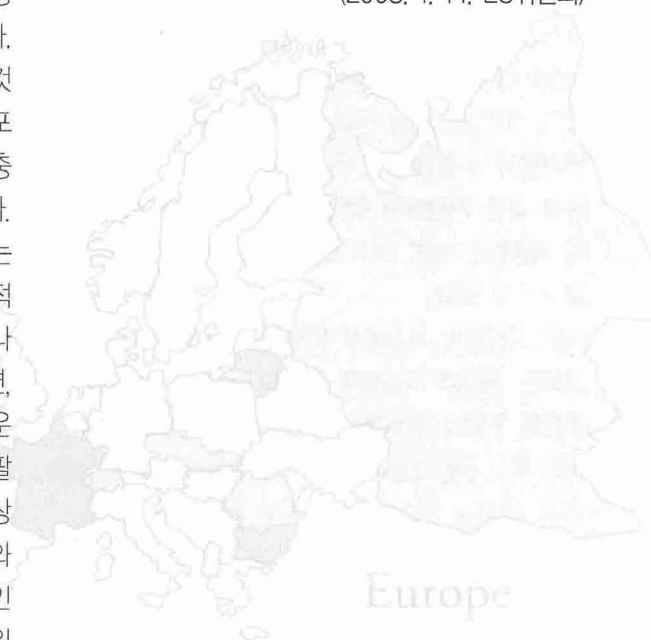
**E**U위원회는 두 건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대해 공식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한 사건은 유럽 상호운용 시스템협회(European Committee for Interoperable Systems)와의 관계에서 상호 운용성에 관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소프트웨어 제품들의 끼워팔기에 관한 사건이다.

상호운용성과 관련해서는 2007년 9월 17일의 MS 판결에서 유럽 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호운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확정했다. 그러나 유럽 상호운용 시스템 협회의 주장에 의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의 오피스 소프트웨어, 서버 및 이른바 .NET 프레임워크 등을 포함해서 상호운용을 위한 명세의 공개를 불법하게 거부했다고 한다. 따라서 EU위원회의 조사는 이들 영역에 집중될 것이며,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파일 포맷인 Office Open XML이 경쟁사들의 제품과 충분히 상호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개별 소프트웨어 제품들의 끼워팔기와 관련해서는 역시 2007년 9월 17일에 유럽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켜야 할 원칙들을 확정했다. 그러나 MS의 브라우저 경쟁사인 Opera의 주장에 따르면, MS가 자신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Internet Explorer를 위법하게 끼워서 팔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MS의 행위로 인해 경쟁상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MS가 제작한 기타 개별 소프트웨어 제품들인 desktop search와 Windows Live에 대해서도 위

원회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MS가 지배적 지위에 있는 운영체제와 더불어서 판매되는 불법적인 끼워팔기 행위에 초점을 두어 조사할 방침이다.

이러한 공식적 조사 개시는 의회 규칙(Council Regulation No 1/2003 제11조 6항)과 위원회 규칙(Commission Regulation No 773/2004 제2조 1항)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적절한 방법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러한 사정을 당사자와 관련 회원국의 경쟁당국에게 통지해야 한다.

(2008. 1. 14. EU위원회)



## EU위원회, 쌍방향 라디오 회사간 기업결합 승인



**E**U 기업결합 레귤레이션에 따라 미국에 소재한 Motorola가 일본의 Vertex Standard를 기업결합 하겠다고 EU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기업결합이 유럽 역내 전체 또는 그 일부에서 유효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Motorola는 무선 및 광대역 통신 기술과 임베디드 기술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모토롤라는 또한 Enterprise Mobility Solutions 사업부문을 통해서 쌍방향 라디오 분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 Vertex Standard는 쌍방향 라디오의 설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쌍방향 라디오란 수신과 발신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서, 이에는 랜드 모바일 라디오(land mobile radio: LMRs)와 아마추어 라디오(이른바 hams)가 있다. 그리고 LMRs 중에서도 소비자용 제품과 전문가용이 구별된다. 전문가용은 소방서나 경찰서 등과 같은 기관에서 구입하는 제품들을 말하는데, 이 제품들은 일반 소비자용보다 훨씬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 사건에서 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생산하는 쌍방향 라디오의 기능이 구별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모토롤라는 대부분 LMRs, 그 중에서도 특히 전문가용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반면에, Vertex Standard는 주로 아마추어 라디오(hams)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LMRs 제품 시장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전문가용 LMRs 시장에

서 모토롤라의 지위를 약간 강화시킬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상의 문제는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분야에서는 모토롤라에게는 Kenwood나 iCOM과 같은 다른 사업자들이 Vertex Standard보다 더 강력한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Vertex Standard는 주로 아날로그 기술 제품을 공략하는 것에 반해, 모토롤라는 임베디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전문가용 LMRs 제품 생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위원회의 판단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7. 12. 21. EU위원회)



● ● ● 독일 ● ● ●

## 연방카르텔청, 경쟁상의 이유로 지자체의 로또 회사 주식취득 금지



**연**방카르텔청은 라인란트-팔츠 주가 로또 회사 (Lotto Rheinland-Pfalz GmbH)의 주식 51%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이 회사는 주정부가 대주주가 아닌 유일한 로또 회사이다. 지금은 라인란트-팔츠 주에 있는 3개의 스포츠 협회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1,200개 점포들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로또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는 라인란트-팔츠 주의 로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시장의 나머지는 하나의 로또 회사(the South German Class Lottery)와 두 개의 TV사들이 점유하고 있다. 또한 로또 시장은 현재 로또 사업에 대한 협약 등으로 인해 법적 및 실제적인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인란트-팔츠 주가 대주주가 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수 있다. 라인란트-팔츠 주의 로또 시장에서의 강력한 경쟁자는 the South German Class Lottery인데, 이 회사는 바덴-뷔템베르크, 바이에른, 헤센, 라인란트-팔츠, 작센 및 튀링겐 주 등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기업결합은 Lotto Rheinland-Pfalz GmbH와 the South German Class Lottery가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이를 승인하는 경우 경쟁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는 것이 연방카르텔청의 입장이다. 여러 주정부들이 the South German Class Lottery를 운영하고 있고, 라인란트-팔츠 주를 제외하고는 각 주정부들은 각각의 주에서 로또

회사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Lotto Rheinland-Pfalz GmbH와 각 주의 로또 회사들 사이의 현실적?잠재적 경쟁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라인란트-팔츠 주에서의 Lotto Rheinland-Pfalz GmbH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5개 주에 각각 있어서 주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로또 회사들의 지배적 지위도 각각의 주 로또 시장에서 강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사행성 분야와 같은 높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부문이라고 할지라도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연방카르텔청이 보여준 것이다. 경쟁법은 제한없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7. 12. 12. 연방카르텔청)



## 공취위, 종묘의 판매업자에 대한 심판 개시 결정



**공**정취인위원회는 2008년 1월 15일 종묘 판매업자 10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개정법(2005년 법률 제35호)의 경과 조치에 의해, 동법에 따른 개정 전 독점금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개시 결정을 했다. 본건은 공정취인위원회가 타키이 종묘주식회사 외 12사에 대해서 2007년 10월 30일의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 10사로부터 심판 수속의 개시의 청구가 있었던 것이다.

타키이종묘 외 31사(이하 32사)는 공동으로 적어도 1998년 3월 19일 이후 양배추와 무 등의 교배종 종자(이하 4종류 종자)에 대해서 각사가 판매 가격을 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기준가격)을 매년 결정하고, 각사가 해당 기준가격의 전년도부터의 변동에 따라서 품종마다 판매 가격을 정해 거래처 판매업자 및 수요자에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일본내 4종류의 종자의 각 판매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

(2008. 1. 17. 공정취인위원회)



## ●●● 일본 ●●●

공취위, 키도 건설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동의 심리판결

**공**정취인위원회는 키도 건설공업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에 대해 2004년 9월 17일 심판 개시 결정을 한 이후, 심판관을 지정하여 심판 절차를 해 왔으며, 2007년 12월 14일 피심인으로부터 2005년 법률 제35호에 의한 개정 전 독점금지법 제53조의3 및 2005년 공정취인위원회 규칙 제8호에 의한 개정 전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 및 심판에 관한 규칙 제8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의 심리판결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신고가 있었다.

한편 피심인 스스로가 구체적 조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정밀 조사한 결과, 해당 구체적 조치가 적당하다고 인정되었다. 따라서 공정취인위원회는 2008년 1월 8일 피심인에 대해 2005년 법률 제35호에 의한 개정 전 독점금지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근거해 동의 심리판결을 했다. 심리판결의 개요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다른 니가타시의 구역에 소재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적어도 1999년 4월 1일 이후 니가타시가 제한 첨부 일반경쟁 입찰, 공모형 지명 경쟁 입찰 또는 지명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해 추진 공법 또는 실드(shield) 공법을 이용하는 하수관 주거지 공사 및 오수관 부설 공사에서 이 공법에 의해 이와 같은 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자만을 입찰 참가자로서 발주하는 하수도 추진 공사에 대해서, 수주 가격의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수주 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 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이 공사의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독점금지법 제3조(부당한 거래

제한의 금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다음의 3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① 피심인은 이와 같은 행위를 취소한다는 취지를 확인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자사를 제외한 기타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피심인은 향후 공동으로 니가타시가 발주한 하수도 추진 공사에 대해서 수주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수주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를 니가타시에 통지함과 동시에 자사의 종업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③ 피심인은 향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008. 1. 10. 공정취인위원회)





## 공취위, 입찰 참가업체에 대해 배제 조치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공**정취인위원회는 독립 행정법인 초록자원기구가 이 하 초록 자원 기구가 발주한 특정 산길 조사 측량 설계 업무의 입찰 참가업체에 대해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를 실시해 왔다. 그리고 이 사건이 동법 제3조(부당한 거래제한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07년 12월 25일 동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배제조치 명령 및 동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과징금 납부 명령을 했다. 또한 이 위반행위에 있어서, 초록 자원 기구의 임원 및 직원에 의한 입찰 담합 등 관여 행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초록 자원 기구 등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통지했다.

특정 산길 조사 측량 설계 업무란 초록 자원 기구가 지명 경쟁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해 발주하는 초록 자원 간선 산길이라고 칭하는 산길의 개설이나 개량 등의 사업과 관련되는 지질 조사 업무 또는 조사 측량 설계 업무를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 21사업자가 범위반을 했으며, 19사업자가 배제 조치 명령 대상이 되었고, 과징금 납부 명령 대상 사업자는 13으로서 이들에 대해 총 9612만 엔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21사업자는 적어도 2004년 4월 1일 이후 초록 자원 기구가 발주한 특정 산길 조사 측량 설계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입찰 전에 초록 자원 기구 삼림 업무 부장으로 있던 자로부터, 그리고 2005년과 2006년에는 초록 자원 기구 삼림 업무부 산길 기획 과장으로부터 직접 또는 발주 사무 담당 직원을 통해서 낙찰 예정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달을 받은 자를 수주 예정자로 정해서 수주 예정자 이외의 사람은 수주 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초록 자원 기구 발주한 특정 산길 조사 측량 설계 업무의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공취위는 다음과 같은 배제 조치 명령을 했다.

- ① 19사업자는 각각 이와 같은 행위를 취소한다는 취지를 확인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각자가 각각 자주적으로 수주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를 이사회 등의 업무 집행의 결정 기관에서 결의해야 한다.
- ② 19사업자는 각각 ①의 조치를 자사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및 초록 자원 기구에 통지하는 한편, 자사 종업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③ 19사업자는 향후 상호간 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하고 초록 자원 기구가 발주한 특정 산길 조사 측량 설계 업무에 대해 수주 예정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13사업자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26일까지 총 9612만 엔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한편, 피심인들의 위반행위에 있어서 초록 자원 기구의 임원 및 직원이 발주가 예정되는 특정 산길 조사 측량 설계 업무의 일람표를 작성해서 해당 일람표에 기재된 업무 및 그 이외에 발주하는 특정 산길 조사 측량 설계 업무에 대해서, 각 사업자에게 초록 자원 기구의 퇴직자의 재직 상황, 사업자의 수주 의욕, 과거의 수주 실적 등을 감안하여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다음, 입찰 전에 자신이나 발주 사무 담당 직원을 통해서 낙찰 예정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넘겨주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입찰담합 등 관여행위 방지법 제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이에 공정취인위원회는 입찰 담합 재발 방지 대책 실시 방침을 제정하도록 하는 한편, 공정취인위원회에도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초록 자원 기구에 대해 입찰 담합 등 관여 행위 등에 대한 통지를 했다. 또한 회계 검사원 및 임야청에서도 입찰 담합 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같은 취지의 통지를 했다.

(2007. 12. 27. 공정취인위원회)